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¹

수질 중 변경에 따른 TMS 폐쇄여부?

상수원보호구역내 위치한 회사입니다. 당사는 폐수배출시설 2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수질TMS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폐쇄 및 공정개선에 따른 폐수량 감소로 수질 3종으로 변경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수질TMS를 폐쇄하여도 무방한지요?

A

제3종 사업장은 수질TMS 부착대상으로 일부 사업장은 부착기한을 유예(배출허용기준 초과시까지)하고 있으나, 제3종사업장으로써 이미 설치된 사업장과 배출량감소로 제3종 사업장으로 변경(1·2종 → 3종)된 경우에는 부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²

생활오수를 우수로 방류?

생활오수(하수)를 우수로 방류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과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요?

A

합류식처리구역에서는 하수를 합류식관로로 방류가 가능하며, 분류식하수처리구역일 경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수

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30조4항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 설비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³

비점오염원 설치여부?

저희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 사업장에서 허가증 사업장으로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사유 : 발생폐수중 특정유해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일부 배출되는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저희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방류수 뿐만 아니라 초기우수도 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당량의 비가 내리지 않는한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최초허가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초기우수는 시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이와 별도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부칙(제7459호, '05.3.31)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06.4.1일 이후 최초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 완충저류시설 유입처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류식 관거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우수를 유입·처리하여도 별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여부?

당 현장은 국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철도건설사업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오니(무기성 오니)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5의2 관계법령에 따라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건조후 양질의 토사와 50%이상 혼합하여 외부반출 없이 전량(약 11,880ton)을 당현장 토공 구간의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득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오니를 외부반출 없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배출자가 직접 자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⁵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환경기술인 교육이 신규교육은 임명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3년 이내 인데 동일 사업장에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환경기술인은 1인이 겸임하는것으로 선임하였다면 1인이 대기,폐수,소음,진동에 대한 교육을 따로 따로 3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회만 받아도 되는지요? 즉 신규교육은 동일 1인이 1년이내 3회(대기, 폐수, 소음,진동) 받고 보수교육도 3년 이내 3회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환경기술인은 임명하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지요?

A 우선, 대기, 수질, 소음·진동의 환경기술인은 1인이 겸임 가능하나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3회) 및 보수교육(3회)은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의 경우 대기 및 수질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 및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신규교육 규정 없음) 보수교육의 경우 최초·신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소음·진동 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아울러, 환경기술인 등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소음·진동 관리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